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12. 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10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04.12. 9.)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진)

- 가. 제정이유
 - 1976년 1월 5일 준공된 현 청사는 건물의벽 타일 탈락, 냉·난방, 소방배관의 급격한 부식·과열 등 주요 시설물 노후화와 복합적인 행정기능 및 서비스의 변화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 등 구민의 욕구를 해소코자 구청, 보건소, 구의회가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청사건물을 확보하여 one-stop제제 기능의 구정업무를 처리케 하므로 행정서비스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회의,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의견청취 등
 -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찬재)

- 가. 신청사 건립 타당성
 - 우리 구 청사는 1976. 1. 5. 건립된 노후한 건물로 안정성 문제, 업무공간 분산으로 인한 민원처리 불편,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으며, 향후 행정수요의 변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은 필요하다 사료됨.
-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 기금의 조성
 - 기금의 조성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교부금으로 조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금의 조성시기에 대하여는 청사부지의 확정 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청사부지의 확정, 구민의 의견수렴, 행정환경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등의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우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조례안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나,
-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패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 제15쪽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의 작성시기와 결산서의 작성시기가 다르므로 본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요지

- 안 제12조제2항 세입세출예산안의 작성시기와 결산서의 작성시기가 다르므로 안 제12조제2항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2조제2항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8호
----------	------------

제출년월일 : 2004. 12. 9.
제출자 : 강두석 위원

1. 수정이유

- 세입세출예산안의 작성시기와 결산서의 작성시기가 다르므로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12조제2항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2조제2항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생략) ② <u>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제정안과 같음) ② <u>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128
----------	-----

제출년월일 : 2004. 11. 1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사유

- 1976년 1월 5일 준공된 현 청사는 건물의벽 타일 탈락, 냉·난방, 소방배관의 급격한 부식·파열 등 주요 시설물 노후화와 복합적인 행정기능 및 서비스의 변화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 등 구민의 욕구를 해소코자 구청, 보건소, 구의회가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청사건물을 확보하여 one-stop체제 기능의 구청업무를 처리케 하므로 행정서비스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회의,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의견청취 등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04.10.12. ~ 10.31.)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따로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의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보조금, 교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구의회, 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구청사"라 한다)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구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구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기금은 목적 의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2. 도시관리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3. 기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행정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